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개정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 승객명부 허위작성 방지 및 승선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(영광군 고시 제2013-10호 2013.1.3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.

붙임: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게시방법(별표)

2015년 5월 8일

영 광 군 수

<u>1.개 정 이 유</u>

○ 어선검사증서에 "야간항해가 금지됨"으로 표시된 낚시어 선의 영업시간은 "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"로 하고,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"03:00 ~ 22:00" 로 함으로써.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낚시어선 의 영업시간을 획정하고자 함.

- 낚시업자·승객의 승객명부 허위작성 방지제도의 부재로 정확하고 신속한 승객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바, 그 제도적·법적 방지제도를 마련하여 낚시객의 승객명부 거짓신고 방지 및 낚시 업자의 낚시객 신원파악에 철저를 기하고자함.
- 낚시객을 무인도, 갯바위, 간출암에 하선한 후 낚시어선이 공선으로 입항 시, 기상불량 등 긴급사항 발생시에 하선자 에 대한 긴급대처가 곤란한 바, 동 낚시어선이 입항시에는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게 함으로써 위험지역 하선 승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어선검사증서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시간 변경
- 낚시어선 승선자 신분증 제시 제도화
- 무인도, 갯바위 등에 하선 후 긴급사항 발생시 전원복귀 제도화
- 타법개정에 의한 "해양경찰서"를 "해양경비안전서"로 수정

3. 별 첨

1. 개정고시 전문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

1. 낚시어선 영업제한 시간

- 가. 어선검사증서에 "야간항해가 금지됨"으로 표시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은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로 한다.
- 나.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 ~ 22:00시 까지로 한다.
- 다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항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함

2.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

- 가.「군사시설보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원자력법」, 「항만법」, 「개항질서법」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나.「문화재보호법」,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보호구역
- 다.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무인도서 및 갯바위(간출암 포함)등으로부터 50m이내 해역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되다.

3.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

- 가. 낚시어선업자는 갯바위등 위험소지가 있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할 때는 낚시객 과 상호연락 체계(선주·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 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- 나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객(승객)을 승선시킬 경우 낚시객이 준수 할 다음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,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① 낚시객은 낚시어선 운항 등에 있어 낚시어선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② 낚시객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서 낚시도중 기상악화시 낚시어선업자 가 안전대피를 위하여 승선토록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 ③ 만약, 낚시객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다.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 등 위험지역 영업을 제한한 구역에 대하여는 안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라. 낚시어선에는 승선정원·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및 이용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, 승선자와 낚시객(승객) 전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다.
- 마.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(마약)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한다.
- 바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해야 한다.
- 사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가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**해양경비안전서**, 경찰관서,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한다.
- 아. 해상에 유류분교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,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- 자. 낚시도구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차. 운항횟수 제한 : 운항횟수는 제한하지 않음
- 카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타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파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
4.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

- 가. 낚시객은 승선한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나. 낚시어선에 승선 할 때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①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
- ② 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- ③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
- ④ 영업시간외 항해. 영업구역 외 지역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⑤ 과다한 밑밥(떡밥)을 사용하거나 납 발돌을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
- 다. 어선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 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영업 금지구역에 하선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.
- 라.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- 마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포획금지체장(체중) 이하의 어린물고기는 포획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바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 - .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
5.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

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이 고시의 시행전 영광군 고시 제2013-13호 (2013.1.31.)는 폐지한다.

[별표]

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1. 게시방법

가. 재질: 변색되지 아니하는 코팅 재질

나. 색상

(1) 글씨 : 흑색

(2) 바탕 : 승선정원 - 백색승객준수사항 - 흑색

(3)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 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래의 (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(종서 식)로 제작

다. 최소규격 : A3용지 종규격(297 × 420mm)

2. 게시장소

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